

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6. 2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491호로 2022년 6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0조의4, 「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2023회계연도 운영지침」 등에 따라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, 기타 조항의 표현을 정비하고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약칭 수정 (안 제2조제3호)
- 나.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신설 (안 제9조의2)
- 다. 총괄조정관을 총괄지원관으로 명칭 변경  
(안 제18조제1항제3호, 제22조제2항)
- 라.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을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범위 한정  
(안 제23조)
- 마. 재난관련 위험정보의 예시 변경 (안 제37조제4항제2호)
- 바.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 (2022. 5. 12. ~ 6. 2. / 21일간) 결과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0조의4, 「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예산 사전검토 2023회계연도 운영지침」 등에 따라 재난 안전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### ○ 주요 내용은

가.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약칭 수정(안 제2조, 제18조, 제26조)

- 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약칭이 “본부장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통합지원본부장과 구분될 수 있도록 “대책본부장”으로 변경하였음.

나.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신설 (안 제9조의2)

- 안 제9조2에서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0조의4가 개정(본조 신설 2020. 6. 9.)됨에 따라 지역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

예산을 편성하기 전,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기 위한 “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”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.

**다.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 중 총괄조정관의 명칭 변경 (안 제18조, 제20조, 제22조)**

- 본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“총괄조정관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, 대책본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제2조제4호에서는 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·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어 총괄조정업무를 대책본부장의 권한으로 판단하여 “총괄조정관”을 “총괄지원관”으로 변경하였음.

**라.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범위 한정(안 제23조)**

- 본 조례 제2조제9호에서는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영등포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.”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“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변경하였음.

**마. 재난관련 위험정보의 예시 변경 (안 제37조)**

- 안 제37조에서는 산이 없는 우리 구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재난관련 위험정보의 예시에서 “산불정보, 산사태 정보”를 “화재정보”로 변경하였음.

## 바.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

### 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투자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“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”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
-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**제10조의4(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,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검토하고, 제11조에 따른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
3. 재난취약 지역·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
4. 재난안전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
5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